E - 79 - 2011

#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대한전기협회 김한수 처장
- o 제·개정 경과
  - 2011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 - NESC Part 4: Rules for the Operation of Electric Supply and Communications Lines and Equipment
  - IEC 61936-1 Power installations exceeding 1 kV a.c.-Part 1: Common rules
  - 안전보건기술지침 (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  - 안전보건기술지침 (전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)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및 제301조(전기기계· 기구 등의 충전부방호)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 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79 - 2011

#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### 1. 목적

이 지침은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작업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작업에 대하여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설치, 안전작업 및 유지관리 작업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작업에 적용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가공전선로(Overhead electric power line)"라 함은 가설된 전선뿐만 아니라 전 선을 지지하는 철탑, 전주 등을 포함한 공중에 가설된 전선로를 말한다.
  - (나) "충전부(Live part)"라 함은 통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로서 중성선을 포함하나 관례상 PEN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.
  - (다) "보호격벽(Protective barrier)"이라 함은 통상의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접근에 대해서도 직접접촉에 대한 보호를 하는 부분을 말한다.
  - (라) "이격거리(Clearance)"라 함은 하나의 끈을 곧게 펴서 2개의 도전성부분을 최단

E - 79 - 2011

거리로 잇는 도전부사이의 거리를 말한다.

- (마) "절연장갑(Insulating gloves)"이라 함은 전기기기를 취급할 경우 감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장갑을 말한다.
- (바) "방호덮개(Protective cover)"라 함은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(또는 충전되지 않은)부분을 덮는데 사용하는 절연재료로 만들어진 덮개로, 딱딱하거나 유연한 형체를 갖춘 상태 또는 시트 형태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.
- (사) "절연담요(Insulating blankets)"라 함은 교류 또는 직류 전기설비에서의 단락사고 위험을 방지하고, 충전부나 접지된 전기도체·전기기기 또는 회로와의 불의의 접촉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(아) "유자격자(Qualified person)"라 함은 서면으로 특정 책임 및 의무를 지도록 사업주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 임명된 사람은 교육과 자격증 또는 경험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(자) "담당자(Designated person)"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험 또는 교육에 의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사업주에 관한 안전규칙

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칙으로 사업주는 아래의 안전규칙을 작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보호구 및 방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. 또한 응급조치장비는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.

E - 79 - 2011

### 4.1 일반요건

# (1) 일반사항

- (가) 사업주는 각 작업자에게 안전규칙을 숙지시켜야 한다.
- (나)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- (다) 사업주는 안전규칙을 따르지 않는 작업자를 재훈련시켜야 한다.
- (라) 사업주는 근접된 충전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전기아크 발생 위험 성에 대한 전위노출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.
- (마) 전기아크 또는 화염에 노출될 때 다음 소재의 재료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.
  - ① 아세테이트
  - ② 나일론
  - ③ 폴리에스터
  - ④ 폴리프로필렌
- (바) 엄격한 안전규칙의 준수로 작업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안전 담당자는 잠재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시로 안전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.
- (사) 안전규칙의 적용에 있어 논쟁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을 최우선으로 한다. 그러나 이 결정이 작업자에게 위험요인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.

### (2)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

- (가)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을 반드시 숙 지시켜야 한다.
- (나) 비상시 응급조치의 기록 사본은 반드시 차량 및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.
- (다)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비상시 응급조치의 방법을 작업자에게 지도해야 한다.

# (3) 책임

- (가) 사업주는 안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.
- (나) 각 팀당 1명의 책임자를 지정한다.
- (다) 현장이 여러 개소인 경우 1명이 각 현장을 담당할 수 있다.

E - 79 - 2011

# 4.2 보호방법 및 장치

# (1) 보호방법

- (가) 사업주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자가 충전부 또는 회전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제 한해야 한다.
- (나) 전기계통의 도면은 허가된 작업자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.
- (다) 작업자는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(라) 작업자는 비정상적인 위험노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.

# (2) 보호구 및 방호장치

- (가)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(예; 안전모, 절연장갑, 절연용구, 안전띠 등)를 제공해야 한다.
- (나) 사업주는 적합한 응급조치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.
- (다) 방호장치의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.
- (3)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시험 또는 검사
- (가) 보호구 및 방호장치를 검사 또는 시험한다.
- (나) 사용전 절연장갑, 절연슬리브 및 절연담요를 검사한다.
- (다) 요구사항에 따라 절연장갑 및 절연슬리브를 시험한다.
- (라) 선로 작업자의 안전띠, 로프, 위치조정 고리 등을 검사한다.
- (4) 표식 및 꼬리표

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식 및 꼬리표를 부착하여 작업자를 보호한다.

- (5) 식별 및 위치
- (가) 작업전 전선로 및 통신선로를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업자에게 제공한다.
- (나) 주위에 설치된 지중설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E - 79 - 2011

# (6) 추락방지

- (가) 사업주는 추락방지 프로그램을 개발, 시행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.
- (나) 추락방지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.
  - ① 훈련, 재훈련 및 서류화
  - ② 장비선택, 검사, 주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서
  - ③ 정착 및 이용성에 대한 특수 참조사항이 포함된 구조설계 및 건전성에 관한 고려사항
  - ④ 인명구조 계획, 관련 교육 및 훈련
  - ⑤ 유해위험 인지
- (다) 사업주는 가죽 100 % 소재의 안전띠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.

# 5. 작업자에 대한 안전규칙

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칙으로 작업자는 아래의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하며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전 점검해야 한다.

### 5.1 개인 방호조치

- (1) 작업자의 자격 및 임무
  - (가) 교육 이수 및 방호조치를 취한 작업자로 지시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.
  - (나) 무경험 작업자는 숙련된 작업자의 지도하에 작업해야 한다.
  - (다) 기기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- (라) 안전이 의심되면 감독자에게 작업지침서를 요청한다.
  - (마) 전원공급선로에서의 임시 작업자는 사업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작업을 할 수 있다.
- (2) 개인 및 일반인 보호
- (가) 활선에 근접해 있는 일반인의 접근을 경고한다.

# E - 79 - 2011

- (나) 결함이 있는 선로 및 장비를 사업주에게 보고한다(예; 이격거리 미달, 애자 파손 등).
- (다) 위험발생 가능한 모든 결함을 보고한다.
- (라) 선로 등에서 작업하지 않을 경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- (마) 활선 작업자는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.
  - ① 개인의 안전을 책임진다.
  - ② 다른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진다.
  - ③ 제3자의 재산을 보호한다.
  - ④ 일반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확보한다.
- (바) 전기 및 통신기술자는 <표 1>의 접근한계 이내로 접근하거나 근접하여 도전 성 물체의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(아) 작업자는 고전압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금속로프, 전선을 갖고 작업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.
- (자) 활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검증된 계측장비로 측정해야 한다.

#### (3) 활선작업

- (가) 전원차단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충전선로로 간주해야 한다.
- (나) 작업 시작전 검전을 통해 충전상태를 확인한다.
- (다) 작업 시작전 운전전압을 확인한다.

### (4) 아크

- (가) 스위치와 같이 운전중 아크를 발생하는 기기로부터 인체를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.
- (5) 용구 및 방호장치
- (가) 작업용으로 제공된 개인 방호장치, 기구 및 용구를 사용한다.
- (나) 작업 시작전 개인 방호장치, 기구 및 용구가 정상상태임을 검사한다.

E - 79 - 2011

<표 1> 충전부의 접근한계

공칭계통전압 (선간전압, kV)	접근제한 (m)		접근한계 (m)	TI 7 7 -1 ( )
	노출 이동도체	노출 고정전로	(부주의한 이동 감안)	접근금지 (m)
0.05 미만	미규정	미규정	미규정	미규정
0.05~0.3	3.05	1.07	접촉금지	접촉금지
0.31~0.75	3.05	1.07	0.31	0.26
0.751~15	3.05	1.53	0.66	0.18
15.1~36	3.05	1.83	0.79	0.26
36.1~46	3.05	2.44	0.84	0.44
46.1~72.5	3.05	2.44	0.97	0.64
72.5~121	3.05	2.44	1.00	0.82
138~145	3.36	3.05	1.10	0.94
161~169	3.56	3.56	1.22	1.07
230~242	3.97	3.57	1.60	1.45
345~362	4.68	4.68	2.59	2.44
500~550	5.8	5.8	3.43	3.28
765~800	7.24	7.24	4.55	4.40

# (6) 보호의

- (가) 지정업무 및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의를 착용한다.
- (나) 활선 근접 작업시 노출된 금속재의 착용을 피한다.

# (7) 사다리 및 지지물

(가) 목재 사다리에 페인트칠을 하지 않는다.

# E - 79 - 2011

- (나) 목재 사다리를 금속으로 보강하지 않는다.
- (다) 충전부 가까이에서 금속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(라) 특수 작업용 도전성 휴대용 사다리는 지정된 작업용으로만 사용한다.

### (9) 추락방지

- (가) 승주자는 높이 3 m를 초과하면 추락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. 이는 버켓트럭, 헬기 및 기타 승강장비를 포함한다.
- (나) 추락보호장치는 사용전에 검사해야 한다.
- (다) 추락보호장치는 고정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.
- (라) 이물질에 의해 D-링으로부터 걸쇠고리의 비정상적인 탈락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.
- (마) 걸쇠고리와 호환장구는 잠금장치를 하여 사용한다.
- (바) 가죽 100 % 소재의 안전띠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(사) 로프가 끊어질 수 있는 장소에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한다.
- (아) 활선에 근접하여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않는다.

#### (10) 퓨즈

- (가) 충전선로에 퓨즈를 설치할 때 절연장갑 또는 절연용구를 사용한다.
- (나) 충전선로에 노출형 퓨즈를 설치할 때는 보안경을 사용하거나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.

### (11) 기계 또는 회전부

- (가) 기동부에서 작업시 폐쇄/탈락절차서를 준수하여 비정상적인 기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- (나) 자동스위치 상태로 작업시 가동부분으로부터 안전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.

#### (12) 통신안테나

(가) 통신안테나 근처에서의 작업자는 규제요건을 초과하는 방사수준에 노출되어서

E - 79 - 2011

는 안 된다.

(나) 방사수준 한계는 OSHA, FCC 및 IEEE 등의 표준을 참고한다.

### 5.2 안전작업의 일반사항

#### (1) 담당자의 임무

- (가) 사고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채택한다.
- (나) 작업자가 안전규칙 및 안전작업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시한다.
- (다)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.
- (라)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작업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.
- (마) 작업에 부적절한 용구 또는 장치를 제한한다.
- (바) 시험 또는 검사받지 않은 용구 또는 장치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한다.

### (2) 구역 보호

- (가)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접근 가능한 구역
  - ① 차량 및 보행자가 작업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.
  - ② 개구부 및 장애물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경고한다.
  - ③ 노출된 개구부나 장애물은 야간 경고전등 설치 및 보호막 시설을 한다.
- (나) 작업자만 접근 가능한 구역
  - ① 방호된 충전부 또는 기동부가 노출되면 안전신호가 표시되어야 한다.
  - ② 방호된 충전부 또는 기동부가 노출되면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.
  - ③ 다중 구간중 배전반의 한 구획에서의 작업 또는 다중 부분과 함께 변전소의 한 부분에서 작업은 충전부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한다.
- (다) 교차 또는 낙하 전선이 존재하는 구역
  - ① 교차 또는 낙하 전선 발생시 작업자는 방호구역에 대기하거나 사고방지를 위한 방법을 사용한다.
  - ②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  - ③ 보수작업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작업자가 수행한다.

# (3) 안전보호

E - 79 - 2011

안전 담당자는 전선로 또는 기기에 근접한 무자격자나 방문자의 안전보호를 해야 한다.

### 5.3 가공전선로의 안전작업절차

- (1) 충전된 전력선에 접근한 전신주 설치, 이동 또는 철거
- (가) 절연되지 않은 인체의 일부로 전신주에 접촉하지 않는다.
- (나) 절연장갑을 착용한다.
- (다) 적절한 방호장치가 사용되지 않으면 차량 또는 접지되지 않은 타 장비의 접촉을 피한다.
- (2) 승주전 구조물 점검
- (가) 전신주, 사다리 등을 오르기 전에 구조물의 하중을 확인한다.
- (나) 지선, 버팀목 또는 다른 안전한 방법이 아니면 전신주에 올라가지 않는다.
- (3) 전선 또는 케이블의 설치 및 철거
  - (가) 설치 또는 철거 전선은 충전된 전선으로부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
  - (나) 접지되지 않은 설치 또는 철거 전선은 충전된 것으로 간주한다.
  - (다) 보행자 및 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 또는 철거 전선의 이도를 관리한다.
  - (라) 구조물의 하중을 확인한다.
  - (마) 가동하는 윈치선과의 접촉을 피한다.
  - (바) 저압선로에 대한 고전압선로의 영향을 고려하고 작업중인 선로가 누설전류 및 유도전압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및 접지 여부를 확인한다.

# 5.4 지중전선로 안전작업절차

(1) 맨홀 및 도로 개구부의 보호 맨홀 등의 개구부는 보호격벽, 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.

# E - 79 - 2011

- (2) 맨홀 및 환기장치가 없는 장소의 가스시험
- (가) 출입전 가연성 또는 인화성가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.
- (나) 가연성 또는 인화성가스가 존재할 경우 출입전에 환기한다.
- (다) 산소 결핍 여부를 확인한다.
- (라) 작업 중 신선한 공기 공급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.

### (3) 화염

- (가) 맨홀 내에서는 금연한다.
- (나) 작업을 위해 화염이 필요한 경우 환기를 위한 철저한 방호조치를 한다.
- (다) 개방 화염을 사용하기 전에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(예, 가스관 공급소 근처)에 대하여 확인한다.
- (라) 작업에 화염이 사용되고 배관이 노출되었을 경우 가연성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이나 격벽을 설치한다.

#### (4) 굴착

- (가) 굴착전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.
- (나) 천공 또는 굴착기계의 운전방향과 교차하는 기존 설비는 노출되도록 한다.
- (다) 전력케이블에 근접하여 굴착용으로 사용하는 수동공구는 비도전성 손잡이로 하다.
- (라) 가연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손상시 작업자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.
  - ① 굴착을 정지한다.
  - ② 모든 화염을 소화한다.
  - ③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.
  - ④ 일반인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.
- (마) 깊이 1.5 m를 초과하는 트렌치 또는 굴착 작업시 붕괴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작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주, 비탈면 또는 흙막이 벽 등이 이용되어야 한다.

### (5) 식별

E - 79 - 2011

- (가) 노출된 지중설비는 식별되고 보호해야 한다.
- (나) 케이블 위에서 작업시 다른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.
- (다) 케이블을 절단하기 전 또는 접속함을 개방하기 전에 표식을 확인한다.
- (라) 다중 케이블 설치장소에서는 작업 대상 케이블을 확실하게 식별해야 한다.